

● 제277회 ●

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제6차 보건복지위원회

서울특별시장애인치과병원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 검 토 보 고 서

2017. 11. 29.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 【 서울특별시장 제출 】

의안번호 2141

### I. 동의안 개요

#### 1. 제출자 및 제출경과

- 가.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 나. 제출일 : 2017. 10. 16.
- 다. 회부일 : 2017. 10. 18.

#### 2. 제안이유

- 가. 서울특별시장장애인치과병원은 중증 및 장애인의 구강진료와 예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치과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시설로, 그동안 민간위탁이 7년이 경과되고, 위·수탁 협약기간이 만료('18.4.17)됨에 따라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 나. 치과진료 사례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을 갖춘 민간의 기관 또는 단체로부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서울특별시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3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에 동의를 받고자 함.

### 3.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서울특별시 장애인치과병원 관리운영 민간위탁

나.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필요성

○ 민간위탁 추진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9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6조
-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 추진 필요성

- 장애인 구강지료를 통한 공익진료 기능을 강화하고 중증장애인 및 의료취약계층 장애인 접근성 향상을 위해
- 전문 치과병원과 협력하여 효율적인 진료연계와 병원시설 운영관리 및 교육 전반에 대하여 공공구강보건의료 기능강화
- 민간위탁을 통해 전문병원의 운영 노하우를 확보할 수 있으며 이미 구축되어 있는 네트워크 조직을 활용하게 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공공의료서비스 제공이 가능

다. 위탁사무 내용

- 장애인치과병원에 대한 비전과 발전계획 수립
- 병원 및 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 장애인 치과진료
- 장애인 공공구강보건의료 연계체계 구축
- 치과진료분야 임상연구 및 장애인 구강보건교육사업 추진 등

라.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 시설명 : 서울특별시 장애인치과병원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장로 207
- 시설규모 : 대지 836.6㎡, 건물 1,606.62㎡(지하1층, 지상4층)
- 지원시설 : 장애인 구강진료
- 개원일자 : 2005년 9월

마. 민간위탁기간

- 2018년 4월 18일 ~ 2021년 4월 17일(3년)

바.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사. 소요예산

- 소요예산 : 총 2,514,246천원('18년 예산편성중)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9조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의 조기 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며,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6조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시립병원, 보건·건강증진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10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병원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2. 다른 법률에 따라 의학·약학 등에 관한 교육·연구와 진료를 위하여 설립된 법인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할 수 있는 병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5. 서울특별시 장애인치과병원

나.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 서울특별시장애인치과병원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추진계획  
(보건의료정책과 '17.9.29)

## II.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정창훈)

### 1 동의안 제출 개요

- 본 동의안은,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인 ‘서울특별시 장애인 치과 병원’ 사무의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재위탁을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임.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sup>1)</sup>은 시장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할 때는 의회의 동의를 필요하다고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7년이 경과하면 의회의 동의를 다시 받도록 되어 있음.
- 시장이 민간위탁하려는 ‘서울특별시 장애인치과병원 관리운영’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장로 207에 위치하여 장애인구강진료를 목적으로 2005년 9월에 설립된 기관임.

1) 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7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장애인 치과병원 시설〉

층 별	용 도	면 적(m <sup>2</sup> )
계	의료시설	1,606.62
지하 1층	세미나실, 의료정보실	336.44
지상 1층	환자대기실, 전신마취실	219.08
지상 2층	진료실, 방사선실, 특수치료실	446.52
지상 3층	진료실, 연구실	447.46
지상 4층	행정실, 옥상 녹지화공원	157.12

### 〈장애인 치과병원의 민간위탁 주요연혁〉

일 자	연 혁
2005. 04.	서울시치과의사회와의 위·수탁 협약 체결
2005. 09.	병원 개원
2008. 04.	서울대학교치과병원과의 1차 위·수탁 협약 체결 (2008.4.18.~2011.4.17.)
2011. 04.	서울대학교치과병원과의 2차 위·수탁 협약 체결 (2011.4.18.~2014.4.17.)
2014. 04.	서울대학교치과병원과의 3차 위·수탁 협약 체결 (2014.4.18.~2015.4.17.)
2015. 04.	서울대학교치과병원과의 4차 위·수탁 협약 체결 (2015.4.18.~2018.4.17.)

## 2 민간위탁 주요 성과

- 서울특별시 장애인 치과병원은 장애인 전담의 구강치료 전문기관으로 지난 실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주요사업의 목표대비 실적은 대부분 90% 정도의 달성률을 보이고 있음. 목표대비 실적이 높은 것은 2015년의 이동치과사업 등으로 나타남. 또한 진료목표 대비 실적이 낮아 진료수익도 목표대비 낮게 나타남.

### 〈장애인 치과병원 주요사업 실적과 달성률〉

연도	사업명	목표	실적	달성율(%)	
2015	장애인 치과치료	환자수(명)	24,945	22,255	89.2
		수익(천원)	4,425,030	3,773,723	85.3
	장애인이동 치과진료사업	환자수(명)	14,910	13,398	89.9
		횟수	215	242	112.6
2016	장애인 치과치료	환자수(명)	25,693	22,018	85.7
		수익(천원)	4,446,013	3,896,616	87.6
	장애인이동 치과진료사업	환자수(명)	15,000	13,571	90.5
		횟수	270	252	93.3

- 건강보험 대상 장애인 비급여 진료비 감면을 확대(20%→30%)나 전신마취 사전검사 one-stop시스템 구축 등 다각도의 노력과 공공성 확보 전략에도 불구하고 목표대비 실적은 낮게 나타남.
- 반면 외부의 평가는 보건복지부에 의하여 의료기관평가인증(2016년), 2015, 2016년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의료계획 시행결과 최우수 표창 등 민간위탁기관으로서 사무가 목적으로 하는 장애인구강진료를 통한 공공의료서비스 제공의 역할에 대한 외부의 평가는 높은 편임.

### 3 민간위탁사무의 적정성 검토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시장의 소관사무 중 시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는

업무 중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 위탁 할 수 있다고 하였음.<sup>2)</sup> 또한 동조례 제6조<sup>3)</sup>에 따르면 시립병원 등 보건, 건강증진과 관련된 시설과 관련된 사무의 경우 민간 위탁할 수 있도록 직접적으로 규정되어 있음.

- 위와 같은 이유로, 치과병원에서 제공되는 의료행위에 대한 전문성은 주지의 사실이라 할 수 있으므로 동 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하여 하자요건은 없을 것으로 여겨짐.
- 다년간 민간위탁을 통해 성과가 제시된 것도 동 사무의 민간위탁이 타당할 수 있다는 경험적 근거로서 작용된다 할 것임.

#### 4 종합의견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적법하게 제출된 동의안이며, 사무의 민간위탁 요건도 충족하는 바 동 사무의 민간위탁은 타당하다고 할 것임.<sup>4)</sup>

2)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3)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생략)

**5. 시립병원, 보건·건강증진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후략)

4) 그러나 예산편성전 사전절차 미이행사안으로 동의안의 처리에 대한 절차적 문제 존재함.